

2009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2009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2009. 6.

제출자 : 평창군수

1. 제안이유

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기준에 의거 작성한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하여,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10조 규정에 의거 평창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 2009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변경안 심의대상은 토지매입이 4건에 90,046㎡ 1,503,860천원임.

- ① 방림 농공단지 조성사업 부지, 28필 76,252㎡ 870,741천원(관광경제과)
▷ 방림면 방림리 610-2번지 외 27필지
- ② 효석 문학의 숲 관리부지, 3필 1,653㎡ 32,682천원(산림과)
▷ 봉평면 창동리 618-4번지 외 2필지
- ③ 대관령 고원전지훈련장 조성사업 부지(추가), 10필 3,240㎡ 314,497천원(문화체육과)
- 대관령 고원전지훈련장 조성사업 부지는 '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으로 심의 의결을 득하였고, 당초 취득 부지인 “횡계리 347번지 외 45필 44,604㎡”에 **횡계리 661-16번지외 9필 3,240㎡를 추가 매입**하고자 함.
- ④ 평창소방서 신축부지, 5필 8,901㎡ 285,940천원(건설방재과)
▷ 평창읍 후평리 733번지 외 4필지

3. 첨부자료

- 가. 2009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변경안 목록
- 나. 관계법령 발췌서 1부.
- 다. 토지대장 열람조서 1부(별첨).
- 라. 사업계획서 각 1부(별첨).

관계법령 발췌

『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』

제10조 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(이하 "관리계획"이라 한다)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

『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』

제7조 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(이하 "관리계획"이라 한다)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 [매입, 기부채납, 무상 양수, 환지(換地), 무상 귀속, 교환, 건물의 신축·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,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] 및 처분(매각, 양여, 교환, 무상 귀속, 건물의 멸실,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으로 한다.

1.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. 이 경우 기준가격은 토지에 대해서는 「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개별공시지가[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(算定)한 금액을 말한다. 이하 "개별공시지가"라 한다]로 하고, 건물과 그 밖의 재산에 대해서는 「지방세법」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되, 건물의 신축·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.

가. 취득의 경우 : 10억원

나. 처분의 경우 : 10억원

2.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재산

가. 취득의 경우 : 1건당 1천제곱미터

나. 처분의 경우 : 1건당 2천제곱미터